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85
----------	------

발의연월일 : 2017. 10. 19.

발의자 : 안상수 · 김승희 · 김진표
김철민 · 김도읍 · 이양수
홍문표 · 정유섭 · 민경욱
권석창 · 이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업체에 달하여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기관이나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에는 인력·시설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음.

이에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등급구분사”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검사하거나 목재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 자”로 정의하고 등급구분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3 및 제19조의4 신설).
- 나.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대학·연구기관, 등급구분사 등에게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 다. 산림청장은 검사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검사결과통지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제8항).
- 라.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목재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및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 마.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제5항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등급구분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 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등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등급구분사의 자격 등) ① 등급구분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구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관 또는 공장에서”를 “자에게 의뢰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판매·유통”을 “통관·판매·유통·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에”를 “제8항까지에”로,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기관등의 지정·인정 기준 및 지정·인정 절차, 지정·인정 변경, 지정·인정 취소”로 한다.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

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5. 등급구분사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인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정지처분을 할”을 “판매정지 처분 및 회수를 명할”로 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제39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4에 따른 등급구분사 자격의 취소

2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인정 취소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5조제1항제5호 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를 “통관하거나 판매·유
통·보관한 자”로 한다.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8년 10월 1일부터”
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9년 10월 1일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65
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의2.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8의2. (현행과 같음)</p> <p>8의3. “등급구분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등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p> <p>9. ~ 11. (생 략)</p> <p><u><신 설></u></p>
	<p>제19조의4(등급구분사의 자격 등)</p> <p>① 등급구분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구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p>

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신 설>

-----.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

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

<신 설>

	<u>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u>
<u>2. (생 략)</u>	<u>4. (현행 제2호와 같음)</u>
<u><신 설></u>	<u>5. 등급구분사</u>
<u>③ ~ ⑤ (생 략)</u>	<u>③ ~ ⑤ (현행과 같음)</u>
<u>⑥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 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판매·유 통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 다.</u>	<u>⑥ ----- ----- 통관·판 매·유통·보관----- ----- -----. ⑦ (현행과 같음)</u>
<u>⑦ (생 략)</u>	<u>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이 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인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u>
<u><신 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른 지정·인정을 받은 경우</u>
	<u>2. 제9항에 따른 지정·인정 기</u>

(생략) <u><신설></u>	(현행과 같음) <u>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3.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u> <u>4.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u>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	제39조(청문) ----- ----- -----

<p>야 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3. · 4. (생 략)</p> <p><u><신 설></u></p> <p>5. (생 략)</p> <p>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생 략)</p> <p>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u>판매하거나 유통한 자</u></p> <p>6. ~ 10. (생 략)</p> <p>② (생 략)</p> <p>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장의 제목,</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제19조의4에 따른 등급구분사 자격의 취소</u></p> <p><u>2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인정 취소</u></p> <p>3. · 4. (현행과 같음)</p> <p><u>5.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u></p> <p><u>6. (현행 제5호와 같음)</u></p> <p>제45조(벌칙)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u>--통관하거나 판매·유통·보관한 자</u></p> <p>6.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1조(시행일) -----</p> <p>-----</p> <p>-----.</p>
---	--

